

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78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2. 12.

발의자 : 조경태 · 박준영 · 김승희

유기준 · 김경진 · 이은재

박맹우 · 정우택 · 문진국

최교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.

그러나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.

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,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0조).

법률 제 호

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중 “500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별 칙)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500</u> <u>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20조(별 칙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천만</u> <u>원</u> -----.